

1993. 11.

光州直轄市西區共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 務 委 員 會

光州直轄市西區共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3年 11月

總 務 委 員 會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3年 9月 24日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다. 回附日字 : 1993年 10月 4日 (總務委員會)

라. 上程日字 { 1993年 11月 2日 第27回(閉會中) 第1次 總務委員會
 { 第28回 光州直轄市西區議會(臨時會)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回 (93年 11月 2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魏 勳 會計課長)

가. 提案理由

○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산출기준, 납부기한, 대부요율, 매각시 수익계약 조건의 상이점을 조정하여

- 재산의 대부료 산출기초의 재산평가액을 하향조정하고, 대부료 납부기간의 연장 사유건물 점유재산의 매각처분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공유재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초의 재산평가액을 2층 ~ 지하실의 경우 부지평가액의 1/2 ~ 1/3에서 1/3 ~ 1/5로 세분 하향조정 경감
(안 제25조 제2호)
- 재산의 대부계약시 대부료 납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30일 납기연장
(안 제26조)
-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조항 신설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丁浩文)

- 이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개정준칙안의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3. 8. 12 개정 공포되었기 상위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4호중 “영제95조 제11항”을 “영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 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조례)

현	개정 (안)
<p>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p> <p>① 구정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생략)</p> <p>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p> <p>① ----- ----- ----- <u>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 <u>제2항</u> ----- ----- ----- -----</p>